

의안번호	2200783
의 퇴 인	박대출 의원
회 답 일	2024. 7. 8.
추계번호	24F120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일반 R&D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및
임시 투자 세액공제 1년 연장 등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① 일반 R&D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2024년 투자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상향하고, ②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함에 따라 재정 수입은 2025년 1조 3,20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개정안은 ‘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’을 포함하고 있으나, 해당 항목은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동 추계에서 제외함
 - 이를 고려할 경우 전체적인 재정수입 감소는 제시된 금액과 다를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등, 2025년

(단위: 억원)

	2025
일반 R&D 증가분 세액공제율 1년 한시 상향(안 제10조 제1항)	-1,550
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(안 제24조 제1항) ¹⁾	-11,658
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(안 제98조의9 신설)	추정곤란
계	-13,208

주: 1) 해당 항목의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(감면액의 20%)를 고려한 값임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 제1항(연구·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○ 일반 R&D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(2024년) 상향 - (현행) 대 25%, 중견 40%, 중소 50% - (개정안) 대 35%, 중견 50%, 중소 60% *	
2	안 제24조 제1항 (통합투자세액공제)	○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- 2023년 투자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2024년 투자분까지 1년 연장	

3	안 제98조의9 (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)	○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 - (요건) ① 1세대 1주택자 ②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분양 주택 취득 ③ 해당 미분양 주택이 수도권 밖 지역에 소재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(면적, 취득가액 등) - (양도소득세 특례) 취득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- (종합부동산세 특례)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(12억) 적용	
---	--	---	--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0조 제1항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○	
2	안 제24조 제1항 (통합투자세액공제)	○	
3	안 제98조의9 (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)	×	○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호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가정

- 2024년 R&D에 대한 증가분 공제율 한시 상향 및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지는 2025년에 발생

- 일반 R&D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안에 대한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 -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R&D 증가분 공제액(2022년)을 기업 규모별로 안분하여 추정
 - － 「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자료」를 활용하여 일반 R&D 증가분 공제액을 기업규모별로 추정
 - 정부가 「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」¹⁾에서 전망한 ‘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’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며, 세액공제율 상향 효과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
-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안에 대한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 - 조세지출예산서²⁾ 및 기획재정부 답변자료³⁾를 참조하여 2023년 통합투자 세액공제액(잠정치)를 기업규모·기술별로 추정
 - 산업은행의 「설비투자계획조사(2023)」상 투자계획 증감률에 따라 통합투자 세액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며,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에 따른 공제율 상향 효과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 -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감면액의 20%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므로, 추계 시 이를 고려함

- 향후 기업에 이익이 충분히 발생하여 확대되는 세액공제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며, 최저한세 적용 등은 고려하지 않음

- 동 추계는 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른 기업의 행태변화를 고려하지 않음
 - 일반 R&D 증가분 공제율 한시 상향,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 등에 따라 기업의 R&D 및 시설투자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, 추계 시 이를 고려하지 않음

1)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, 「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」, 2024.7.3.

2) 정부, 「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, 2023. 9.

3) 기획재정부, 「국무위원후보자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)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」, 2023. 12.

- 이외에 개정안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,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동 추계에서 제외함
 - 해당 안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수준, 미분양주택 취득 후 양도 시 발생하는 차익 규모, 특례 대상자가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등을 추정해야 하지만,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세수효과를 추정할 수 없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일반 R&D 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한시 상향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- (제도 개요)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술별로 다음과 같음
 - 일반 R&D에 대한 세액공제는 증가분(전년 대비 초과분)과 당기분 중 유리한 것을 기업이 선택함
 - 증가분 = (당해 일반R&D 비용 - 직전 4년 일반 R&D 연평균 비용) × 공제율
 - 당기분 = 당해 일반R&D 비용 × 공제율

- (공제실적) 2022년 일반 R&D 세액공제 실적은 총 2조 2,858억원 수준

[표 2]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실적(법인세): 2018~2022년

(단위: 억원)

	2018	2019	2020	2021	2022
중소기업	18,688	19,953	12,810	12,662	14,512
중견기업	2,155	2,228	2,145	1,983	2,535
대기업	6,211	5,394	7,019	5,689	5,811
계	27,054	27,576	21,974	20,334	22,858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2024년 한시적으로 일반 R&D의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10%p 상향하는 내용

[표 3] 일반 R&D 증가분 공제율 상향안

(단위: %)

		현행			개정안		
		대	중견	중소	대	중견	중소
일반 R&D (택1)	당기분	최대 2 ¹⁾	8	25	최대 2 ¹⁾	8	25
	증가분	25	40	50	35	50	60

주: 1) '수입금액 대비 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 비중 × 1/2' (2% 한도)

(2) 추계방법

□ (일반 R&D 증가분 세액공제액 추정) 국세청이 제출한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(2022년 신고분)를 바탕으로 기업규모별로 증가분 공제액을 추정

- 명세서상 전체 일반 R&D 공제세액 대비 증가분 비중
 - 대기업 31.8%, 중견기업 33.3%, 중소기업 16.1%

[표 4] 기업규모별·유형별 일반 R&D 세액공제액 추정: 2022년 기준

(단위: 억원)

	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계
일반 R&D 세액공제	전체	14,512	2,535	5,811	22,858
	- 당기분	12,178	1,690	3,966	17,833
	- 증가분	2,334	845	1,846	5,024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일반 R&D 세액공제액(증가분)이 「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」 상 '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' 전망에 따라 변동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2025년 공제액을 전망하고, 개정안의 일반 R&D 증가분 공제율 한시 상향을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
-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전망 : ('24년) 2.5%
- 일반 R&D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안에 따른 공제율 변화
 - 증가분 공제율(%): 대기업 25 → 35, 중견기업 40 → 50, 중소기업 50 → 60

[표 5] 일반 R&D 증가분 세액공제율 상향에 따른 세액공제액 증가: 2025년
(단위: 억원)

		2025
현행 공제율 적용 (A)	중소기업	2,555
	중견기업	924
	대기업	2,020
	소계	5,499
한시 상향 공제율 적용 (B)	중소기업	3,065
	중견기업	1,155
	대기업	2,829
	소계	7,050
차이 (B-A)	중소기업	511
	중견기업	231
	대기업	808
	소계	1,55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3) 추계결과

- 일반 R&D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2024년 한시적으로 기업규모별로 10%p 상향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5년 1,55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5년
(단위: 억원)

	2025년
일반 R&D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(안 제10조 제1항)	-1,550

나.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

(1) 제도 개요

- 임시 투자 세액공제는 2023년 4월 11일 개정에 따라 도입되어 2023년 투자분에 한하여 적용
 - 당기분 공제율(%): (일반) 대 1 → 3, 중견 5 → 7, 중소 10 → 12
(신성장·원천기술) 대 3 → 6, 중견 6 → 10, 중소 12 → 18
 - 증가분 공제율(%): 3 → 10
- 개정안은 현행 2023년 투자분에만 적용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2024년 투자분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

[표 7] 임시 투자 세액공제 공제율

(단위: %)

	기본					임시 투자 세액공제			
	당기분			증가분		당기분			증가분
	대	중견	중소			대	중견	중소	
일반	1	5	10	3		3	7	12	10
신성장·원천기술	3	6	12			6	10	18	
국가전략기술	15	15	25	4		15	15	25	10

(2) 추계방법

- (2023년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액) 조세지출예산서 및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추정
 - (일반·신성장원천기술) 전체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에서 국가전략기술 시설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바탕으로, 기업규모별·기술별로 안분
 - 기업규모별 세액비중이 2022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로 기업규모별로 안분
 - 명세서상 R&D 당기발생세액 비중(2022년 기준)을 기준으로 일반 및 신성장·원천기술 실적 안분
 - (국가전략기술) 기획재정부가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상 수치를 인용하여 활용

[표 8] 기술유형별 시설투자 관련 공제액 추정: 2023년 기준

(단위: 억원)

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계
일반 투자	3,172	783	2,789	6,744
신성장·원천기술	216	177	6,146	6,538
국가전략기술	8	9	7,483	7,500

자료: 정부의 「조세지출예산서」 및 국세청 제출자료, 기재부 서면답변서 등을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「설비투자계획조사」 상 설비투자 증감률에 따라 향후 투자 관련 세액 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 후,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에 따른 공제율 상향 효과를 비례적으로 적용하여 세수효과 추계

- 「설비투자계획조사(2023)」 상 2023~2024년 설비투자 증감률
 - 2023년 설비투자 증감률(잠정): 대 -5.3%, 중견기업 9.8%, 중소기업 5.8%
 - 2024년 설비투자 증감률(전망): 대 3.0%, 중견기업 4.3%, 중소기업 6.5%
-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에 따른 공제율 변화
 - 당기분 세액공제율(%): (일반) 대 1→3, 중견 5→7, 중소 10→12
(신성장·원천기술) 대 3→6, 중견 6→10, 중소 12→18
 - 증가분 세액공제율(%): (일반/신성장·원천기술) 3→10
(국가전략기술) 4→10

[표 9]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에 따른 세액공제액 증가: 2025~2026년

(단위: 억원)

		2025
현행 공제율 적용 (A)	중소기업	3,817
	중견기업	1,099
	대기업	8,715
	소계	13,631
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(B)	중소기업	5,880
	중견기업	1,973
	대기업	20,350
	소계	28,203
차이 (B-A)	중소기업	2,063
	중견기업	874
	대기업	11,635
	소계	14,57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3) 추계결과

-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투자분까지 1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25년 1조 1,65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1년 연장할 경우 법인세는 1조 4,572억원 감소하나, 농어촌특별세 과세(2,914억원)를 고려한 세수효과는 -1조 1,658억원

[표 10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등, 2025년

(단위: 억원)

	2025
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(안 제24조 제1항)	-11,658

주: 제시된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(감면액의 20%)를 고려한 값임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정훈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837	nororand@assembly.go.kr